

##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등에 따라 “2021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20.

보건복지부장관

### 1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개요

#### 1] 지정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 위탁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제2조의5(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이하“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지정 목적

-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운영 필요

####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이란?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인력·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함

### 3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 주요 역할

- 의무교육 대상기관\* 모집
- 장애인식개선교육 세부계획 수립
-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관련 자료 보관
- 인식개선교육기관별 소속 강사 역량강화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모니터링(자체 평가 등)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보고 등

\* 의무교육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 급 학교

### 4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지정 및 취소, 점검 및 관리 등
-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정 신청서의 접수·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지정 취소 사실관계 확인, 지정서 발급 등
- (인식개선교육기관)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전문강사 보유 등
- (의무교육 대상기관)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의뢰, 교육 수행, 교육 결과 보고 등

### 5 추진일정(안)



※ 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2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

- ① **신청 자격**(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로 전문강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인식개선교육 역량을 갖춘 곳)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 ②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 기간: 2021. 10. 25.(월) ~ 11. 19.(금)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해 유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able-edu7@naver.com](mailto:able-edu7@naver.com))

- 이메일 제목: *인식개선교육기관 신청\_기관명*

※ 제출 완료에 대한 회신을 접수 후 24시간 이내 드릴 예정이오니, 회신 메일 확인 필수

- 제출 서류(다음 페이지 제출 서류 목록 참고)

- 인식개선교육기관 신청서, 교육 운영 계획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 보유 현황,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출 서류 목록을 필히 확인하시어, 누락 없이 제출 바람

**\* 전문강사 및 보유 현황 증명서류**

-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2호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을 말함
- 단, 최초 1차년도(2021년도) 지정 신청기관에 한해 전문강사 1명 이상 보유에 한하여 유예 처리
  - ① 전문강사 보유한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사위촉장, 해당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 ② 전문강사 보유하지 않은 경우: 협약서(2022년도 말까지 전문강사 확보 계획)

제출 서류 목록	비고
①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문	자유 양식
②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법정 양식)	붙임 1
③ 신청 자격 증명서류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시설 정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정관 등	장애인복지단체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정관 등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단체 정관(또는 규약) 등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자격
④ 교육 운영 계획서(공통 양식)	붙임 2
⑤-1. 전문강사 보유 현황(공통 양식)	붙임 3-1
⑤-2. 협약서(공통 양식, 전문강사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 한함)	붙임 3-2
⑥ 서약서(공통 양식)	붙임 4
⑦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붙임 5
⑧ 교육 시 활용하는 기본(대표) 교육 교재 또는 교안(PPT)	자유 양식
⑨ 기관 소개 자료 - 3단계 영상 심사 시 해당자료 활용	자유 양식
⑩ 사업자등록증(업종/업태: 교육) 또는 고유번호증	-
⑪ 증빙서류(공통 양식)	붙임 6
• 장애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대상별 교육 콘텐츠 개발 실적 현황	-
• 강의 실적증명서 또는 증명 가능한 강의 수행 실적 현황	-
• 전문강사 위촉장, 재직증명서	-
• 기타 교육 운영 계획서 작성 내용에 대한 참고 가능한 증빙서류 등	-

※ 단, 상기 제출 서류는 심사 운영 상, 필요에 따라 일부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3 문의처

○ 인식개선교육기관 신청 관련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02-3433-0621, 1522-0495-내선⑤)

### 3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절차

#### 1 지정 절차

- (1단계: 적격 심사) 제출 서류 적격 여부\* 검토

##### \* 심사 제외 대상 안내

- 신청 자격이 아닌 기관이 지원한 경우(집합 대면 교육의 형태가 아닌, **온라인 원격 교육만** 운영하는 기관 등)
-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시간 내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 제출 서류를 누락한 경우(1개라도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신청서류 상 서명 등이 누락된 경우 등)
- 제출 서류의 사실관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

- (2단계: 서류 심사) 신청 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서면 평가 실시
- (3단계: 영상 심사\*) 2단계 서류 심사 합격 기관에 한하여 심사위원이 기관장 발표 및 대표 강사 강의시연,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기관장 의지, 강사의 역량 평가 실시

##### \* 영상 심사 관련 안내

- 2단계 서류 심사 합격 기관 대상 영상 심사 실시(단,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대면 심사 변동 가능. 일정 및 장소 등은 주후 개별 통보)
- 기관장 발표 및 대표 강사 강의시연
  - ① 기관장 발표: 제출한 교육 운영계획서를 기반으로, 기관 소개 내용을 별도의 PPT파일을 준비하여 5분 발표
  - ② 대표 강사 강의시연: 2단계 서류 심사 결과 발표 후, 별도 제시한 강의시연 주제에 대하여 별도의 PPT파일을 준비하여 15분 강의시연

- (4단계: 종합 심사) 서류·영상 심사 점수를 합산한 결과와 종합적인 기타 의견 등을 판단하여 최종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2 단계별 세부 절차 및 일정(안)



※ 단, 상기 단계 및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4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요건

### 1 주요 지정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4항)

-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 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세부 기준표(안)

구분	평가항목	주요 평가요소	배점
기관의 역량 (30)	기관의 사업 운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장애인식개선 관련 사업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수행 경험</li> <li>• 강사와 의무교육 대상기관과의 교육 연계 노력 등</li> </ul>	10
	조직구성의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운영인력(조직)의 적정성 및 전문성</li> <li>• 양질의 강사 보유(경력 등의 전문성) 및 강사진 구성의 적절성 등</li> </ul>	10
	기관장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장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가치관 및 비전</li> <li>• 교육기관 운영 목적 및 취지와 부합성 등</li> </ul>	10
교육 운영 적정성 (30)	계획 수립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인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li> <li>• 사전 조사의 적절성</li> <li>• 교육 대상별 교육 콘텐츠 및 방법의 다양성 등</li> </ul>	20
	교육 운영 강사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강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시연의 우수성 등</li> </ul>	10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기반 적정성 (40)	교육 프로그램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교육 교재 및 교안의 적정성 등</li> </ul>	20
	교육 훈련기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관 운영 및 환경의 적정성(기자재 보유 등)</li> <li>• 기관의 교육훈련 방법 및 훈련전파 노력도 등</li> </ul>	20
장애 당사자 중심(5)	장애 당사자 강사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사 중 50% 이상 장애당사자 강사 보유</li> </ul>	5
총 점			100점 (가점 105점)

※ 단, 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해당 항목은 3단계 영상 심사. 단,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대면 심사로 변동 가능. 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개별 통보
- 세부 기준표에 의거 종합 심사를 통한 최종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3 유의사항

- 신청 자격(3page)을 충분히 확인한 후,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경우에만 지원 바람
- 제출 서류 목록(4page)을 필히 확인하시어, 누락 없이 제출하며 증빙 서류에 있어 교육 운영계획서에 작성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는 자유롭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 바람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상 제출 서류는 제출 서류 목록(4page)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서류 제출로 같음함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명기된 심사 제외 대상(5page) 여부를 숙지하고 지원 바람
- 제출 서류는 장애인복지법령, 상기 세부 기준표(6page)를 숙지하고 정한 기준(평가요소)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지정된 이후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됨

## 5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결과 발표

### 1 지정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 최종 인식개선교육기관 안내
  - 제출 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인식개선교육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등 현황 공고

## 2 지정서 발급(재발급)

###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 (지정명의) 보건복지부장관
- (발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⑤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1. 명 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소재지:

3. 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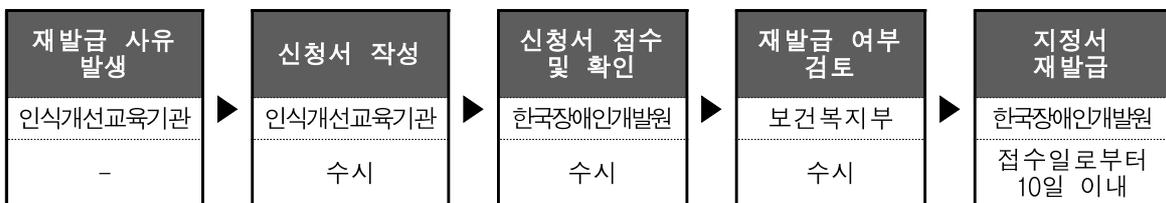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4항·제5항에 따라 위 기관 또는 단체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 (재발급 신청) 한국장애인개발원
- (재발급 사유)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제출 서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참고2), 재발급 사유 증명 서류 등



## 3 문의처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결과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02)

### ① 의무교육 대상기관 모집

- 사전 교육 수요 파악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무교육 대상기관 모집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홍보
- 지역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교육 실시 계획(교육 일정,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강사, 모집 방법 등)을 사전 공지하여 의무교육 대상기관(대상자) 모집(정기 교육)

### ② 장애인식개선교육 세부계획 수립

- 교육 실시 확정 대상기관의 교육 대상, 방법 등을 검토하여 개별 교육 대상기관별 교육 실시 세부계획 수립
- 교육 세부계획에는 교육 방법, 강사명, 교육 내용, 교육 평가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③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관련 자료 보관

- 교육 세부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정기 및 수시)
-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3년간) 및 제출 의무

### ④ 인식개선교육기관별 소속 강사 역량강화

- 양질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제공을 위한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체 운영(보수교육 등)
- 사전에 기관별 제출한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방법 및 훈련전과 내용을 토대로 강사 관리
- 지속적인 강의 활동 연계 등

## 5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모니터링

- 사전에 기관별 제출한 교육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 자체 평가 실시 및 개선 방안 마련

## 6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보고 등

- 분기별 전 분기 교육 실적 보고(공통양식 제공 예정)
  - 교육 일자, 방법, 담당자 정보, 강사명, 교육비, 교육 주제, 참여 인원 등 실적 보고

# 7 인식개선교육기관 혜택

##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상 '교육방법 및 활용' 항목 만점 부여

- ◎ (실적배점표 도입)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실적 점검 제도 도입(2021년도부터)

※ 실적배점표 점검 결과,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경우 부진기관으로 언론 등에 공표 예정

- 인식개선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받은 기관의 경우, 30점 배점 중 30점 만점 부여

평가항목	배점
① 계획 수립	10
② 교육 실시	90
· 교육 참여	60
· <b>교육 방법 및 활용</b>	
· <u>인식개선교육기관</u> 또는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	<b>30(만점)</b>
· 일반강사 교육	20
· 내부직원 또는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	15
· 일반자료 활용 교육	10
③ 가점(장애당사자 강사 활용, 교육 추가 실시 등)	10
<b>총 점</b>	<b>100점 (가점 110점)</b>

## 1 인식개선교육기관 모니터링

- 교육 실적 분기별 확인 후, 기관별 교육 내용 관련 모니터링 실시
  - 교육을 받은 기관 담당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전문강사 보유여부 등 확인
  - 사전에 기관별 제출한 교육 운영 계획서 등을 토대로 실제 운영 여부 등 계획의 실행 충실성 모니터링
- 정기적 현장 방문
  -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 실시

## 2 인식개선교육기관 취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청문절차)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 제출한 교육 운영 계획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행 여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현저히 계획 대비 이행 정도가 미흡한 경우
- 전문강사를 확보하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기간(2022년도 말)까지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어 이를 토대로 지정받은 경우 등

### \*\*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란?

- 지정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전문강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된 경우
  - ① 전문강사 보유한 기관: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일 이후 6개월 이상 전문강사를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 ② 전문강사가 없는 기관: 전문강사 확보 유예기간인 2022년 말 이후 6개월 이상 전문강사를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 3 인식개선교육기관 평가

#### ○ 연간 운영 결과 보고에 따른 평가

- 연간 교육 실적 보고, 모니터링 결과, 교육 교안 등 연간 교육 사업 운영 결과 보고
- 전문강사 보유현황, 강사 역량강화 운영 결과 등 보고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교육 운영 결과 평가

#### ○ 인식개선교육기관 평가 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운영 체계 (60)	· 교육 운영 계획 이행 적정성	20
	· 의무교육 대상기관 확대 및 유지 노력도	20
	· 강사의 역량 강화 노력도(교육 훈련 전파 노력 등)	20
운영 체계 (40)	· 기관의 교육 활성화 노력도(교안 개발 노력 등)	20
	· 교육 만족도 조사 및 실적 보고의 적정성	10
	·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환류 및 개선 노력도	10
<b>총 점</b>		<b>100점</b>

※ 단,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 (우수 인식개선교육기관 선정) 향후 인센티브 마련 예정

- 붙임 1.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2. 교육 운영 계획서
- 3-1. 전문강사 보유 현황
- 3-2. 협약서
4. 서약서
5.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6. 증빙서류(앞표지)

## 제 출 서 류

제출 서류 목록	비고
①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문	자유 양식
②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법정 양식)	붙임 1
③ 신청 자격 증명서류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시설 정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정관 등	장애인복지단체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정관 등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단체 정관(또는 규약) 등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자격
④ 교육 운영 계획서(공통 양식)	붙임 2
⑤-1. 전문강사 보유 현황(공통 양식)	붙임 3-1
⑤-2. (전문강사가 없는 기관의 경우)확약서(공통 양식)	붙임 3-2
⑥ 서약서(공통 양식)	붙임 4
⑦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붙임 5
⑧ 증빙서류(공통 양식)	붙임 6
• 장애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대상별 교육 콘텐츠 개발 실적 현황	-
• 강의 실적증명서 또는 증명 가능한 강의 수행 실적 현황	-
• 전문강사 위촉장, 재직증명서	-
• 기타 교육 운영 계획서 작성 내용에 대한 참고 가능한 증빙서류 등	-
⑨ 교육 시 활용하는 기본(대표) 교육 교재 또는 교안(PPT)	자유 양식
⑩ 기관 소개 자료(기관장 발표 자료로, 교육 운영 계획서 내용 기반으로 작성) - 3단계 영상심사 시 해당자료 활용(5분 발표용 PPT)	자유 양식
⑪ 사업자등록증(업종/업태: 교육) 또는 고유번호증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4.>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청기관	명칭(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 운영 계획서 2. 전문강사 보유 현황 3.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서

2021. . .

○○○ 법인 · 단체명

# 목 차

요 약 .....	1
1. 비전 및 목표 .....	0
2. 주요 사업 수행 실적 .....	0
3. 교육 운영 부문(교육 운영 계획) .....	0
4. 재정 계획 .....	0
5. 강사 역량강화 계획 .....	0
6. 인력 구성 현황 .....	0
6-1. 전문강사 확보 방안 .....	0
7.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수행 실적(최근 3년간) .....	0
8.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네트워크 구성 현황) .....	0
9. 주요 교육 평가 또는 모니터링 방법, 환류 방안 .....	0
10. 교육 장비(기자재) 보유 현황 .....	0

《 요약 》

<b>기관유형</b>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b>소재지</b>	
	<i>법인·단체명</i>		<b>우편번호</b>	
<b>설립일자</b>	<i>0000. 00. 00</i>		<b>대표자명</b>	
<b>사업자등록번호</b>			<b>담당자명</b>	
<b>홈페이지</b>			<b>EMAIL</b>	
<b>FAX</b>			<b>인력</b>	<b>강사</b>
<b>전화번호</b>			<b>구성</b>	<b>그 외 인력</b>
<b>전체 강사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의 실적</b>	2019년	00건	<b>주 교육방법</b>	<input type="checkbox"/> 강의 <input type="checkbox"/> 체험 <input type="checkbox"/> 기타( )
	2020년	00건	<b>주 교육대상</b>	<input type="checkbox"/> 성인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유아
	2021년	00건	<b>주 교육활동 지역</b>	
<b>기관의 설립목적</b>				
<b>기관의 연혁</b>				
<b>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b>				
<b>주요 사업내용</b>				

## 1. 비전 및 목표

- 기관의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 목적)
  - (주요 연혁)

년 월 일	내 용
00년 00월 00일	기관 설립

- 현 기관의 설립목적 및 가치관, 비전
  -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사업의 필요성)
  -

## 2. 주요 사업 수행 실적 (강의 실적 제외)

- 그 간 장애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과
  -
- 그 간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별 콘텐츠 개발 수행 경험 및 성과

교육대상별	콘텐츠 내용 및 성과
유치원생	손가락 인형 개발 / 00% 만족도 평가, 00회 교육 실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온라인 콘텐츠 00000명 수강 / 00% 만족도 평가
성인	
기타 직군별 등	

### 3. 교육 운영 부문(교육 운영 계획)

#### 가. 교육 대상기관 모집방법(그간 운영방식, 지정 이후 모집계획 등)

- 그간 모집방법
  -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이후 교육 대상기관(교육생) 모집계획
  -
- 인식개선교육기관 홍보방안
  -

#### 나. 교육수요 파악 현황

- 주 교육활동 지역 내 교육수요 현황 .... (000기관, 00시, 0000원, 000유치원 00개소 등)
  -

#### 다. 교육목표 설정

- 교육수요 파악을 통한 교육 운영 계획
  - 연간 교육인원, 교육횟수 ...

#### 라.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및 방법의 다양화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를 위한 운영 계획
  -

교육대상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운영 계획
유치원생	대면 / 교구 등을 활용한 체험 교육, 인형극
초등학생	마술을 활용한 인식개선교육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인식개선교육
성인	
기타 직군별 등	

마. 비대면 교육 운영방법

- 비대면 교육 시, 교육 운영방법

-

바. 기대효과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

## 연간 교육(정기 교육) 운영 계획(안)

*연간 교육 운영 계획을 도표, 표 등으로 자유롭게 작성*

*\*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총괄적으로 작성*

*(수시로 강의 신청에 따른 계획이 아닌,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이후 정기적인 교육 운영 계획안 작성)*

*교육 모집인원, 교육기간, 교육횟수, 교육내용, 교육장소 등 작성*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이후, 직접 해당 기관의 소재지에서 대면 교육을 진행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 방법 등 작성*

#### 4. 재정 계획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이후, 운영에 따른 재원 마련 계획

-

- 강사 교육비 측정방법 및 집행 계획

-

#### 5. 강사 역량강화 계획

- (기관-강사)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기관에서의 소속 강사 역량강화 방안

-

- (강사-강사) 강사 간 교육훈련 방법 및 훈련전파 계획

-

- 기관의 강사 선발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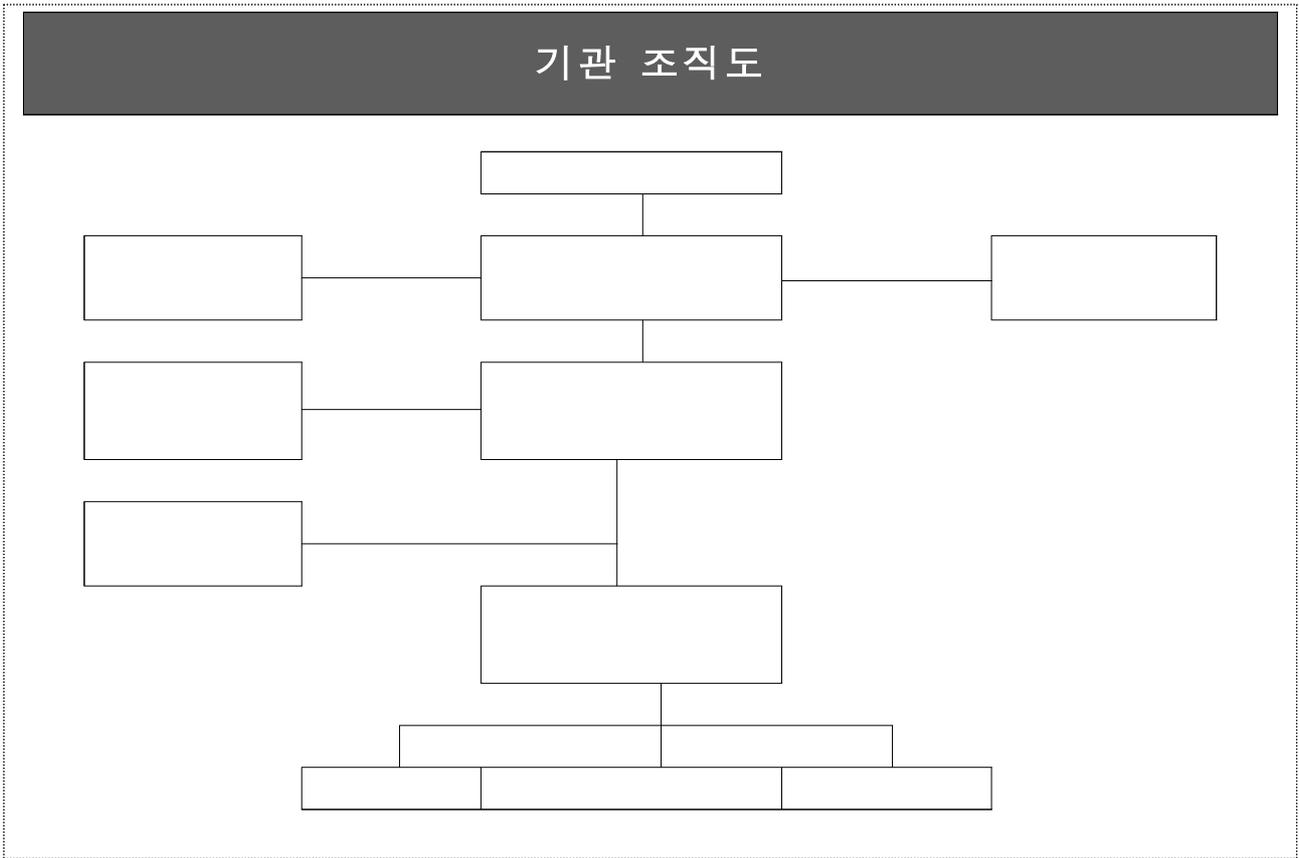
- 그 간 기관에서 실시한 강사의 교육, 강의 매칭 연계 방법

-

### 강사 연계 및 관리 계획(안)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이후 기관과 강사 매칭, 연계 전략 등 제시*

## 6. 인력 구성 현황



### 가. 인력 구성(총괄)

구분(부서)	성명	재직기간	상근여부	장애유무	장애유형
기관장		00년 00개월	<input type="checkbox"/> 상근 <input type="checkbox"/> 비상근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홍보(영업)					
교육 운영(관리) 전담인력					
전문강사					
소속강사					
행정인력					
그 외 인력					

나. 교육 운영 전담인력(필수)

성명			상근여부	<input type="checkbox"/> 상근 <input type="checkbox"/> 비상근
			계약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관련 사항	부서		연락처(직통)	
	직위		E-mail	
	재직기간		장애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주요 업무				

다. 소속강사 보유 현황(전문강사 세부 현황 별도 작성. 소속강사만 작성)

성명			상근여부	<input type="checkbox"/> 상근 <input type="checkbox"/> 비상근
			계약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관련 사항	부서		연락처(직통)	
	직위		E-mail	
	재직기간		장애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이력				
주요 강의 실적	그 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실적 작성			

※ 전문강사 보유 현황은 별첨2에 별도로 작성

6-1. (전문강사가 없는 기관의 경우) 전문강사 확보 방안

<b>전문강사 확보 방안</b>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blue;">* 현재 소속강사를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하여, 전문강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 예정 등 전문강사가 없는 기관의 경우 전문강사 확보 방안 작성</p>

## 7.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수행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수행 실적(2019~2021)
- 최근 실적을 맨 위에 기재(각 연도별 최대 30건씩 작성 가능)
- 현재 소속되어 있는 전문(또는 소속)강사가 기관명의로 교육을 수행한(기관연계) 실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교육으로 작성 필요(강사 개인명의로 섭외 요청되어, 진행한 교육 해당 불가)

연도	교육주제(교육명)	강사명	교육일정	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방법
2021					유아, 청소년, 성인	강의, 체험 기타등
2020						
2019						

## 8.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네트워크 구성 현황)

- 그 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현황, 교육에 있어서의 유관기관 활용 계획 등

연계기관명	기관 성격	연계 내용 및 활용 계획
0000	민간기관	교육장소 연계 활용
0000	민간기관	체험교육 활동 연계

- 교육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 등

-

-

## 9. 주요 교육 평가 또는 모니터링 방법, 환류 방안

### 교육의 질 관리, 평가·환류 체계

\* 만족도 조사 방법 및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 마련 방법 등 작성.  
 기존 교육 실시 후, 평가 방법과 향후 피드백·환류 방법

## 10. 교육 장비(기자재) 보유 현황

가. 교육 기자재(교재 등) 보유 현황

구분	품명	수량	용도
교재	PPT교안		성인용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안
교구	키트		
교육콘텐츠	영상		초등학생 교육콘텐츠(영상)
	VR체험		대학생 교육콘텐츠(VR체험 콘텐츠)
교육장비(기자재)	빔		
	노트북		

## 교구, 교육장비 실물 사진

\* 교구, 교육장비 등의 실물 확인을 위한 사진 첨부

### 나. 교육기관 시설 현황

구분	기관 현황
소재지	
소유 구분	<input type="checkbox"/> 기관 소유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시설 규모(면적)	
교육기관 내에서 직접 교육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교육 가능 <input type="checkbox"/> 교육 불가능
편의시설 설치 현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 등

### 다. 교육기관 세부 시설 현황

순번	장소명칭	용도	교육가능인원 (해당 장소에서 교육이 가능한 기관만 작성)	면적
1	강의실1	오프라인 수업 가능	20명	〇〇㎡
2	강의실2	온라인 수업 가능 (온라인 교육 강의 장비 셋팅)	20명	〇〇㎡
3	회의실1			
4	휴게실			
5	화장실			
6	장애인용 화장실			
7	사무실			

## 교육기관 장소(편의시설 포함) 실물 사진

\* 해당 소재지에서 직접 교육도 가능한지 등의 파악을 위한 사진 첨부. 가능하다면, 편의시설 설치 현황도 첨부

강의실1(정면)	강의실1(후면)
강의실2(정면)	강의실2(후면)
휴게실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1. 전문강사 보유 현황(총괄)

연번	성명	재직기간	생년월일	장애유무	장애유형
1		00년 00개월	0000.00.00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2					
3					
4					

○ 강사 위촉장,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2. 전문강사 보유 현황(세부)

연번	1	성명	상근여부	<input type="checkbox"/> 상근 <input type="checkbox"/> 비상근
			계약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관련 사항	부서		연락처(직통)	
	직위		E-mail	
	재직기간		장애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이력				
주요 강의 실적	그 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실적 작성			

연번	2	성명		상근여부	<input type="checkbox"/> 상근 <input type="checkbox"/> 비상근
				계약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관련 사항	부서			연락처(직통)	
	직위			E-mail	
	재직기간			장애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이력					
주요 강의 실적	<i>그 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실적 작성</i>				

연번	3	성명		상근여부	<input type="checkbox"/> 상근 <input type="checkbox"/> 비상근
				계약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관련 사항	부서			연락처(직통)	
	직위			E-mail	
	재직기간			장애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이력					
주요 강의 실적	<i>그 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실적 작성</i>				

연번	4	성명		상근여부	<input type="checkbox"/> 상근 <input type="checkbox"/> 비상근
				계약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관련 사항	부서			연락처(직통)	
	직위			E-mail	
	재직기간			장애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이력					
주요 강의 실적	<i>그 간 실시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실적 작성</i>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서  
-증빙서류-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서 작성에 있어,  
사실을 증빙하고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2021. . .

○○○ 법인 · 단체명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1. 6. 4.>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명칭(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변경 사항	구분	(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주소 등)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1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⑨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 등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⑪ 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0호, 2021. 6.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2021. 6. 29.>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전문개정 2016. 6. 28.]

[제목개정 2021. 6. 1.]

[시행일: 2022. 1. 1.] 제16조

**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자료나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이하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관리
2.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3. 인식개선교육기관 점검 및 관리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5.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7호, 2021. 6.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이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서
  2.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 보유 현황
  3.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게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조의4(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식개선교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2조의5(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법 제25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란 법 제25조제7항 및 영 제16조의4제2호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